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 공무원 채용 가산점 신설〉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4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7.
3. 회부연월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

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인재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근무예정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3%를 가산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2조의3(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인재의 정착을 위하여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현행	개정안
	<u>사항 외에 가산점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¹⁾을 의미하고 2021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현재 전국 89개의 시·군·구가 지정·고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비인구감소지역을 압도하는 등 지역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 대비 2024년 10월의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율(0.82%)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3.51%)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전체 인구 감소 위기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²⁾.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있고³⁾,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양질의 일자리 부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김용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3년, 인구 변화는?」, 나라살림브리핑 제427호, 나라살림연구소, 2025.2.27.
- 3) 이상림,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2. 21.

족에 기인하며, 실제로 2020년과 2022년 실태조사에서 이탈 청년의 약 3분의 1이 직업 문제를 이주 사유로 응답한 바 있음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 내 가산점 제도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흐름을 억제하여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인재의 정착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내 가산점 제도가 국가를 위한 공헌의 보상을 목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 경력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은 기존 제도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의 육성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존재하고, 해당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

4) 이원도, 「심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2023.

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여 가산점을 통한 혜택이 지방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음.

반면,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으로 이러한 가산점 제도는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들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⁵⁾.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 적용 대상]

대상	근거 법률	가산점 비율 (과락이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 본인 및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5)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료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시험 내 가산점 제도가 국가에 대한 헌신 및 공헌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기존 제도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시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인구감소지역 내 15년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해당 가산점 미부여 응시생과의 형평성 및 가산점 미부

여 응시생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평등원칙이라는 가치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⁶⁾,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⁷⁾과 결부되어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⁸⁾.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⁹⁾.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직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무담임권이

6)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7)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9)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마516

라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있음¹⁰⁾.

이에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내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그만큼 축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¹¹⁾,

현행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종전 10%에서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어 기존의 제도가 지닌 위헌성을 치유한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내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¹²⁾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해야 할 헌법적 의무¹³⁾에

10)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1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

12)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응한 입법자의 작위의무 이행결과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음.

개정안도 현행 제도와 유사하게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거주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책무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 요구될 것으로 보임.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123조가 ‘지역경제 육성’을 그 실현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는바¹⁴⁾,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시험 내 가산점 제도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유공자 등 영속적 지위를 갖는 대상과 달리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지정 해제 및 신규 지정 시 발생할 가산점 대상자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

14)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최초로 89개의 시·군·구가 지정된 이후 5년 단위로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고¹⁵⁾, 이러한 5년 단위의 지정·고시 체계는 개정안의 가산점 제도 수혜대상 역시도 가변적임을 의미함.

이에 현행 인구감소지역이 재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에 따라 기존 수혜자의 가산점 자격 상실 여부 및 기존 비인구감소지역이 신규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과거 거주 이력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 선행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 지정의 가변성에 따른 수혜 자격 상실 및 소급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지정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인재에게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에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